

< 2025년 관세법령 개정사항 II - 교재순 >

구민희 관세사

- ★ 2025년 2월28일 전까지 개정된 시행령입니다.
 - 기존에 개정사항 I 과 같이 참조하시면 됩니다.
 - 교재순으로 하였습니다. (기존 기본서를 보면서 개정사항 정리하세요)

★ 출제 가능성에 따른 중요도 표시

개정중요도를 ★/★★/★★★ 로 표기하였으니 참고하세요.

★ 개정의 성격을 표시함

1. 개정내용이 신규법률이면 **신설**
2. 개정내용의 내용의 변화이거나 명칭의 변화이면 **변경**
3. 개정내용이 기존내용의 정리적 성격이면 **정리**
4. 개정내용이 없어지는거면 **삭제**
5. 개정내용이 하위법률에서 상위 법률로 우상향되었다면 **승격**

★ 개정된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함.

★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1차시험과 상관없는 법 개정사항은 배제함.

1. 구민회 관세법 - 과세편

● 교재 36페이지 ★ - 표현 (정리)

개정 전	개정 후
(1)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③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1)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 ③ <u>지식재산권 등의</u>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 교재 105페이지 ★ - 표현 (정리)

개정 전	개정 후
(3) 서류제출의 생략대상 가격신고 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 생략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상기 (2)에 해당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①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3) 서류제출의 생략대상 가격신고 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 생략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상기 (2)에 해당하는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① 같은 <u>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물품을</u>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4) 일괄가격신고(포괄가격신고) 세관장은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가 상기 (3) 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신고를 일정기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4) 일괄가격신고(포괄가격신고) 세관장은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가 상기 (3) 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신고를 <u>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u> 일정기간 일괄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 **교재 105페이지 ★★ - 제출대상 구체화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p>(본문 생략)</p> <p>① 송품장</p> <p>② 계약서</p> <p>③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p> <p>④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p>	<p>(본문 생략)</p> <p>① 송품장</p> <p>② <u>수입물품 구매계약서</u></p> <p>③ <u>다음의 자료</u></p> <p>㉠ <u>가산요소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u></p> <p>㉡ <u>간접지급에 따른 다음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u></p> <p>㉢ <u>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u></p> <p>㉣ <u>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u></p> <p>㉤ <u>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u></p> <p>㉥ <u>공제요소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의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나 그 밖의 증빙자료를 말한다)</u></p> <p>㉦ <u>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u></p> <p>④ <u>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수입물품 가격산출 내역 등 내부가격 결정자료</u></p> <p>⑤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p>

● **교재 108페이지 ★ - 확정가격신고시 제출서류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p>확정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이 적힌 신고서에 영 제15조제5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확정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이 적힌 신고서에 <u>영 제15조제5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u>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 **교재 112페이지 ★ - 의견제시사항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p>(8) 의견제시기회 세관장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해야 하며,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① (생략) ② 2평가방법부터 6평가방법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중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p>	<p>(8) 의견제시기회 세관장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해야 하며,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① (현행과 같음) ② <u>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같은 조 제1항 각 호(가산요소)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계산 방법</u> ③ 2평가방법부터 제6평가방법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중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p>

● **교재 119페이지 ★★ - 반려사유 추가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p>(6) 신청의 반려 관세청장은 과세가격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의 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p> <p>① - ④ (생략)</p>	<p>(6) 신청의 반려 관세청장은 과세가격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의 신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p> <p>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해당 거래관계 또는 거래내용 등 과세가격 결정에 중요한 사항이 신청 내용과 달라 관세청장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u></p>

● 교재 119페이지 ★★ - 유효기간 세분화 (정리)

개정 전	개정 후
<p>(8) 통보된 과세가격결정방법에 의한 과세가격결정의 효력</p> <p>중략</p> <p>① - ③ (중략)</p> <p>④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의 통보일로부터 3년(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결과의 통보일을 기준으로 2년 이후부터 3년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신고기간을 2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신고될 것</p>	<p>(8) 통보된 과세가격결정방법에 의한 과세가격결정의 효력</p> <p>중략</p> <p>① - ③ (중략)</p> <p>④ <u>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고할 것</u></p> <p>㉞ <u>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결과의 통보일로부터 3년</u></p> <p>㉟ <u>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다음 ㉠부터 ㉢까지의 기간</u></p> <p>㉠ <u>결과의 통보일</u></p> <p>㉡ <u>결과의 통보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 다만, 통보일 기준으로 2년 이후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신고기간을 2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로 한다.</u></p>

● **교재 386페이지 ★★★ - 중복조사사유 세분화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p>(2) 중복조사금지 ~중략~ 5) 그 밖에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밀수출입, 부정·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p>	<p>(2) 중복조사금지 ~중략~ 5) 그 밖에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일제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상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밀수출입, 부정·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② 관세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관세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③ 관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p>

● **교재 405페이지 ★★★ - 출국금지대상자 요건 변경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p>① 출국금지대상자 ~중략~ 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가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p>	<p>① 출국금지대상자 ~중략~ 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p>

● 교재 417페이지 ★ - 민간위원 자격변경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p>⑥ 민간위원</p> <p>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p> <p>1. - 2. (생략)</p> <p>3 「관세사법」 제27조, 「세무사법」 제17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p> <p>4 (생략)</p>	<p>⑥ 민간위원</p> <p>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민간위원이 될 수 없다.</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관세사법」 제27조, 「세무사법」 제17조, 「공인회계사법」 제48조 또는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p> <p>④ (현행과 같음)</p>

2. 구민회 관세법 - 통관편

● 교재 18페이지 ★ - 승선 또는 탑승신고 기재사항 추가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p>* 령 제163조 (승선 또는 탑승신고)</p> <p>법 제14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 또는 탑승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p> <p>1. ~ 3. (중략)</p>	<p>* 령 제163조 (승선 또는 탑승신고)</p> <p>법 제14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 또는 탑승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p> <p>1. ~ 3. (중략)</p> <p>4. 다음의 물품을 하역하는 운송차량의 차량번호</p> <p>㉠ 선박용품</p> <p>㉡ 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p> <p>㉢ 법 제143조제1항제3호(원양어선에 무상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에 따른 물품</p>

● 교재 88페이지 ★ - 특례 적용 표현 정리 (정리)

개정 전	개정 후
<p>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와 요건</p> <p>세관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법 제174조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기업에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30 이상의 특허를 부여해야 한다.</p>	<p>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특허와 요건</p> <p>세관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u>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u>(이하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u>중견기업으로서 다음 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u>(이하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법 제174조제3항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기업에 보세판매장 총 특허 수의 100분의 30 이상의 특허를 부여해야 한다.</p>

● **교재 89페이지 ★ - 특례 적용 표현 정리 (정리)**

개정 전	개정 후
<p>(2)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보세판매장 요건의 예외</p> <p>중략~</p> <p>법 제176조의2제2항에서 “기존 특허가 만료되었으나 (3)에 따른 신규 특허의 신청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존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외의 자에게 특허를 부여할 경우 상기 (1) ①또는 ②에 따른 특허 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p> <p>② 영 제192조의3제1항에 따른 특허의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없는 경우</p>	<p>(2)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보세판매장 요건의 예외</p> <p>중략~</p> <p>법 제176조의2제2항에서 “기존 특허가 만료되었으나 (3)에 따른 신규 특허의 신청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존 특허의 기간 만료, 취소 및 반납 등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① <u>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소기업 또는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견기업 외의 자</u>에게 특허를 부여할 경우 (1) ①또는 ②에 따른 특허 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p> <p>② 영 제192조의3제1항에 따른 특허의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춘 <u>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소기업 또는 특허보세구역 특례 적용 대상 중견기업</u>이 없는 경우</p>

개정 전	개정 후
<p>(3) 보세판매장 신규특허의 신청</p> <p>중략~</p> <p>1. - 6. (생략)</p> <p>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정도</p>	<p>(3) 보세판매장 신규특허의 신청</p> <p>중략~</p> <p>1. - 6. (현행과 같음)</p> <p>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u>「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u>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정도</p>

● 교재 148페이지 ★ - 보세운송업자 등 등록의 신청 (정리)

개정 전	개정 후
<p>2. 등록의 신청</p> <p>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2. 등록의 신청</p> <p>상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u>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u>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u>신청서 및 첨부서류</u>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 교재 170페이지~ 통관파트 전체 ★ - 법 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 범위 확대 (변경)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등” 으로 수정

● 교재 236페이지 ★ -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정정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p>(3) 수출입 신고대상 우편물</p> <p>중략~</p> <p>① - ④ (생략)</p> <p>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p> <p>가. - 나. (생략)</p> <p>㉠ 그 밖에 가. 및 나.의 물품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국민보건을 위하여 수출입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품</p> <p>⑥ (생략)</p>	<p>(3) 수출입 신고대상 우편물</p> <p>중략~</p> <p>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수입물품</u></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 그 밖에 가. 및 나.의 물품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국민보건을 위하여 <u>수입신고</u>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품</p> <p>⑥ (현행과 같음)</p>

● 교재 316~318페이지 ★ - 한자표현 한글화 (개정)

1. 개정시간 ---> 업무시간
2. 임시개청 ---> 임시업무

● 교재 321페이지 ★★ - 통계 작성·교부 대행기관의 지정 등 (신설)

* 기존의 제276조의2(관세무역데이터 제공시설 및 제공절차 등)은 제276조의3으로 이동

* 시행령 제276조의2(통계 작성·교부 대행기관의 지정 등)

(1) 대행기관 지정 요건

관세청장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통계 등의 작성 및 교부 업무를 대행할 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 ② 수출입 관련 통계의 작성·교부 업무에 전문성이 있을 것
- ③ 대행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조직 및 시설을 갖추 것

(2) 제출서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상기 (1)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지정 검토 및 결정

관세청장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대행기관으로서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행기관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 지정해제 사유

관세청장은 대행기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① 또는 ④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 ①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②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③ 그 밖에 대행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 ④ 하기 (5)에 따른 시정기간 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

(5) 시정명령

관세청장은 대행기관이 상기 (4) ② 또는 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6) 세부규정

상기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교재 342페이지 ★★ - 권한의 표현 변경 등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p>☑ 령 제28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p> <p>① 반출통고 위탁 세관장은 상기에 따라 법 제209조제1항에 따른 통고(자가용보세구역에서의 통고를 제외한다)의 권한을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위탁한다.</p> <p>② 보세운송 도착보고수리 위탁 세관장은 상기에 따라 법 제215조에 따른 보세운송의 도착보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위탁한다.</p> <p>③ 보세사 등록 위탁 세관장은 상기에 따라 법 제165조제3항에 따른 보세사의 등록과 법 제2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p>	<p>☑ 령 제28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p> <p>① 반출통고 위탁 세관장은 법 상기에 따른 통고(자가용보세구역에서의 통고를 제외한다) 업무를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위탁한다.</p> <p>② 보세운송 도착보고수리 위탁 세관장은 상기에 따라 보세운송의 도착보고의 수리에 관한 업무를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위탁한다.</p> <p>③ 보세사 등록 위탁 세관장은 상기에 따라 법 제165조제3항에 따른 보세사의 등록과 법 제2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및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다음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p> <p>① 법 제222조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한 업무 ② 법 제222조제3항에 따른 영업에 관한 보고의 수리 및 서류제출의 접수에 관한 업무 ③ 법 제222조제5항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의 갱신 및 연장에 관한 업무</p>

● 교재 342~343페이지 ★★ - 보세사 시험 위탁 신설등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 령 28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 령 28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p>① 검사비용 지원업무 위탁</p> <p>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상기에 따라 법 제17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물품 검사비용 지원업무의 일부(신청서 접수, 지원요건 및 금액에 관한 심사에 한정한다)를 세관 검사비용 지급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②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 위탁</p> <p>관세청장은 상기에 따라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신고에 관한 업무(신고서의 접수 및 보완요구만 해당한다)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한다.</p> <p>③ ~ ④ 생략</p>	<p>① 보세사 시험 업무 위탁</p> <p>관세청장은 법 제165조제1항에 따른 보세사 시험 업무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장에게 위탁한다.</p> <p>② 검사비용 지원업무 위탁</p> <p>개정전 (1)의 내용</p> <p>③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 위탁</p> <p>관세청장은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의 신고에 관한 업무(신고서의 접수 및 보완요구만 해당한다)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지식재산권 등 보호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한다.</p> <p>④ 개정전 ③의 내용</p> <p>⑤ 개정전 ④의 내용</p>